

문서번호 전시 18 - 972

수 신 대표이사(기관장)

참 조 전시·홍보·마케팅 담당자

제 목 「제20회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 출품 요청 건

귀 사(기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명절선물 전문 전시회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 이 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명절선물전은 설과 추석에 앞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제품과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품격 있는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대량 구매를 준비하는 기업(총무·구매 담당자)과 단체를 비롯한 백화점·마트 등의 유통 바이어에게 참신한 명절선물을 선보여 왔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참가업체와 명절선물 구매에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1000여 가지 선물세트로 구성된 '영란선물 특별관'을 마련해 참가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지혜의 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명절선물전을 참여하는 참가업체와 상품의 지속적인 On/Off-Line 홍보·마케팅을 위해 명절선물쇼핑몰과 e메일·홍보 템플릿 발송 등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모션도 함께 병행됩니다.

대량 구매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와의 만남을 통해 참가업체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리고 매출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에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관(단체)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 전시기간 : 2018년 8월 16일(목) ~ 19일(일)

■ 전시장소 : COEX

■ 주 최 : 메세E&D·대한급식신문

■ 신청기간

· 1차 : 7월 6일(금)까지 [MD 및 유통 관계자 대상 사전 홍보지원 혜택 제공]

· 2차 : 7월 20일(금)까지 [품목별 접수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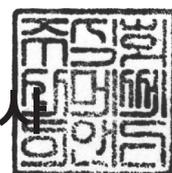
■ 신청문의 : 『명절선물전 사무국』 서울 광진구 능동로 253

Tel (02)515-4855 / Fax (02)515-4820 / e메일 ex2@fsnews.co.kr

※ 별 첨 :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 출품신청서

메세 E&D

대표이사



대한급식신문사 대표이사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 출품신청서

◎ **출품업체 개요** ※아래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며 회사명은 인쇄물 등에 각종 참가업체명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회 사 명																
	1. 주식회사, (주),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회사 성격을 의미하는 글자를 제외한 상호명을 띄어쓰기에 맞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전시회는 별도의 부스상호간판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위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 전시회관련 모든 인쇄물에 반영됩니다.															
주 소											홈페이지					
담 당	(부 서)				(직 위)				(성 명)				(휴대폰)			
전 화					팩 스				메 일				전시회			
													계산서			

※E-mail과 휴대폰 번호는 추후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시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출품 및 전시품목** (출품부분은 해당되는 □에 'V'로 표시하고 세부전시품목을 기재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정책홍보·지자체관	<input type="checkbox"/> 생활용품	<input type="checkbox"/> 전통상품	<input type="checkbox"/> 주류	< 세부전시품목 >
<input type="checkbox"/> 식·음료	<input type="checkbox"/> 농수축산물	<input type="checkbox"/> 건강식품	<input type="checkbox"/> 기타	

◎ **출품신청 내역** ※코너부스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VAT별도)

구 분		신 청 량		단 가	
① 필수사항 (부스사양)	부스형태 (1부스 = 3m x 3m)	독립부스	부스	1,900,000원 / 부스	
		기본부스	부스	2,200,000원 / 부스	
		기본부스 변형	부스	2,500,000원 / 부스	
		프리미엄 부스	부스	2,800,000원 / 부스	
		코너할증	<input type="checkbox"/> 선택 V표 (선착순에 한함)		200,000원
② 선택사항 (부대시설)	관람객 DB관리 시스템		대	200,000원 / 대	
	수도		개소	200,000원 / 개소	
	인터넷		port	150,000원 / port	
	전기추가 (부스당 1kw 무상제공)	유상추가(일반)		kw	50,000원 / kw
		무상전환(24시간)		kw	10,000원 / kw
		유상추가(24시간)		kw	60,000원 / kw
	전화(국내)		대	50,000원 / 대	
출품료 합계	출품료 (①+②)			원	
	부가세 (출품료 총액의 10%)			원	
	합 계			원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 출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품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출품업체 대표자 : (인)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 사무국 귀중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 출품규정

Festive Gift Fair 2018

제1조(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출품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Festive Gift Fair 2018)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서울 광진구 능동로 253 소재 2018 한가위 명절선물전(메세E&D·대한급식신문사)을 말한다.

제2조(출품신청)

1. 전시회 출품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사무국이 제작한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출품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VAT를 포함한 출품료의 50%)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출품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출품신청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스규모, 부대시설, 상호명 등의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그 통보의 시기가 주최자 입장에서 전시회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경우 주최자는 변동사항에 대해 응할 책임이 없다.

제3조(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목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는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타사제품 및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품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출품료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출품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출품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하며, 잔금 50%는 2018년 7월 27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출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출품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출품료 및 부대시설비 등 전시회 진행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전시회 종료 전까지 미납 시, 주최자는 완납 시 까지 그 전시자의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전시자의 출품취소 또는 변경)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최사에 서면으로 취소통보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납입한 출품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출품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사항이거나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공사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지정 철거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 부스 내의 장치물과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방화규칙)

1. 전시자는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를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가스렌지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전시품 또는 장치물에 대해 전시장 내 반입을 불허하며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출품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출품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해결)

1. 본 출품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